

4. 1991년도에 3,000여만원의 군비만을 투자하여 낡은 마에삼존불 관리사를 신축하였음은 물론, 우금까지도 관리 인건비조차 군비로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천주교 순례지인 본군 해미면 소재지에 위치한 사적 제116호로 지정된 해미읍성내의 동헌등이 단청이 퇴색되어 있는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예산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바, 장관님께서는 이런점을 헤랑하시어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등 대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귀부의 무궁한 발전과 장관님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2. 10. 9.

건의자

서산군의회 의장
부의장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건의서

(건명 : 영락원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한 사항)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헌신노력하시는 장관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옵고, 저희 충남 서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9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바쁘신 국정수행중에도 저희 서산군민의 바램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저희 서산군은 충남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후한 고장으로서 불과 몇년전만해도 전국제일의 용군이었으나, 1989년 1월 1일자로 법률제 4050호에 의거 3개 시, 군으로 분리된후 군세가 일시에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2000년대를 향한 대북방외교의 전진기지로써 발돋움하기 위하여 민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특히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본군 운산면 고풍리에 1954년부터 나환자 정착촌(일명 영락원)이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현재는 35가구, 10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92. 9말 현재) 그들은 행정기관의 보조등 지원에 힘입어 2,100여평의 돈사에서 2,000여두의 양돈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오로지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 대책을 세워 경제활동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에 부수되는 환경 및 보건향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3. 영락원 직하단부에 위치한 고풍저수지 (1954. 4준설)를 상수원으로하여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본군 운산면 소재지 주민들은 물론, 6만여명의 서산시민, 당진읍민등 100, 000여명에 대한 수질오염원이 문제로 커다란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계수단으로 많은 양돈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영락원에서 오·폐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아 축산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고풍저수지로 유입되어 환경 및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고풍저수지의 수원을 식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영락원 존재조차 반대하는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으로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해 설득하고 있지만 한정된 군비를 투자하여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국민보건 향상 차원에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4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하시어 영락원내 오·폐수 처리장시설(정화조시설등)을 해주실 것을 장관님께 9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리오니 특단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부의 무궁한 발전과 장관님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2. 10. 9.

건의자

서산군의회 의장
부의장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서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서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 2항 제 4호 또는 제 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면제신청) ①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